

산 립 청

주 의 요 구

제 목 사방시설 사후관리 소홀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경상남도 본청

내 용

「사방사업법」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2에 따르면 준공 후 4년이 지난 야계사방사업의 사방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

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2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 ‘사방시설의 유지관리 매뉴얼(2014.12.22. 제정)’에 사방시설의 정기점검은 매년 6.30까지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, 다만 사방시설 준공 후 5년 이상 10년 이내의 사방시설은 2년마다 실시할 수 있으나,

아래 【표】 “사방시설의 점검결과 등급판정”과 같이 전년도 평가등급이 B등급 및 C등급인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실시하여야 한다.

【표】 사방시설의 점검결과 등급판정

등 급	점검결과
A등급 (손상없음)	사방시설의 변형·손상 등이 없는 양호한 상태의 시설로서 안전진단을 시행하지 않아도 무방한 상태
B등급 (관찰필요)	사방시설에 약간의 손상·결함 등이 있으나, 안전진단을 시행하지 않아도 무방한 시설로서 지속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상태
C등급 (안전진단 필요)	사방시설에 누수·균열 및 파손 등의 심각한 구조결함이 발생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한 상태

따라서, 사방시설 준공 후 4년이 경과한 사방시설의 경우 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, 준공 후 5년 이상 10년 이내의 사방시설지의 경우도 전년도에 B등급 또는 C등급을 받았을 경우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,

사방시설의 침하, 붕괴, 파손 및 균열 등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사방시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사방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보완, 개량, 철거 및 재시공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그런데도, 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산00구 소재 ○○댐 등 15개 시·군 총 66개소의 사방댐의 경우 2015년도 사방시설 정기점검 결과가 B등급 또는 C등급을 받았는데도, 2016년도에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사방시설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.

조치할 사항 경상남도지사는

「사방사업법」 제15조에 따라 사방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미실시 등 사방시설 사후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주의 하시고,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